

□ 적용요령

- 2026. 1. 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§14)
 - (시행자) 이 법 시행 전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
 - (입주기업) 이 법 시행 전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입주협약*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
- * 산업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배치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

② 개정조문

<지방세특례제한법>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78조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의 시행자 또는 「산업기술단지 지 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 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, 조성공사가 시행되 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의 100분의 35(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 의 60)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 지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</p>	<p>제78조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」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또는 「산업기술단 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,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1. 수도권(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 다)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</p>